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현 행 법	의 의 안	검 토 안	비 고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고, 이를 방지하며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행위를 강요·알선하는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처벌하고 이를 방지하며, 강요에 의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성매매행위를 한 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요보호자"라 함은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와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행위"라 함은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이를 약속하고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을 사거나 파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2. "성매매 행위자"라 함은 전호의 방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3. "성매매된 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한 행위로 인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장애인, 외국인여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청소년'을 말한다. 가. 성적 인신매매, 감금, 강간, 폭행 나. 심각한 상해나 육체적, 장소적 구금에 관한 협박, 위계(偽計) 또는 선불금 기타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을 곤경에 빠뜨려 성매매를 거부하기 어렵게 하는 일체의 행위 다. 자신을 고용 또는 관리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의하여 중독 되어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행위"라 함은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받거나 이를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등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행위를 알선·권유·유인하는 행위 나. 성매매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행위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라.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려는 자를 고용 또는 관리하는 행위 3. "성매매된 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행위 및 상태로 인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가. 인신매매, 감금, 강간, 폭행, 협박 나. 위계 또는 선불금 등 채무의 이용 다. 고용 또는 관리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이하 "마약 등"이라 한다)에 중독된 상태	의뢰안2—"성매매행위자"는—"성매매행위"정의규정 만으로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의뢰안3. 장애인, 외국인여성,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에 타인의 강제에 의하여 아니한 때에도 성매매된 자로 보호해야 되는지 검토가 필요.

현행법	의의안	검토안	비고
	4. 제3호 가항의 “성적 인신매매”라 함은 성을 파는 행위, 알선 등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서 정한 “음란”행위에 중사하게 할 목적으로 선불금, 계약금, 대여금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한 금전 기타 경제적 이익을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을 불문하고, 사람을 모집, 운반, 이동, 은닉, 인도 또는 인수 및 전매하는 일체의 행위(국가간의 이동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성매매알선 등 행위”라 함은 성매매행위를 매개, 주선, 권유, 유인, 강요하거나 성매매행위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제공하는 것, 자신의 업소에 성을 파는 행위자를 고용하는 것, 수입을 목적으로 기타의 자를 고용 또는 이용하여 나 채공연 등 일체의 성적인 음란행위를 제공함과 아울러 성을 파는 행위자를 고용 또는 이용하는 것 및 성매매 행위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6.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라 함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 이를 법률상 또는 사실상 지배하는 관계에 있는 자, 법률상 또는 사실상 그 자금 또는 부동산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7. “시설 등 이용자”라 함은 성매매된자, 성매매행위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제63조에서 정한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8. “불법수익”이라 함은 제12조, 제13조, 제15조에서 정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단,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불법수익은 술값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총 수령금액으로 한다. 9.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 함은 불법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기타 불법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10. “불법수익등”이라 함은 불법수익,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그 재산과 그 재산 외의 재산이 혼합된 재산을 말한다.		의뢰안4. 인신매매에 관하여 특별히 정의하지 않아도 형법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유인, 매매 등)의 규정에 비추어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뢰안 후단부분의 모집, 운반, 이동 등은 범죄의 공범으로 당연히 처벌될 것임. 따라서 의뢰안4는 검토안 제5조 처벌조항에서 바로 규정함.. 의뢰안5. 성매매행위를 강요한 경우는 성을 팔거나 사도록 강요하는 것인바, 성을 팔도록 강요한 경우는 검토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강요행위로 처벌하고 있고, 성을 사도록 강요하는 경우는 그 예가 있을지 의문이며, 구성요건으로서 강요보다는 권유·유인이 더 넓은 개념으로 보이므로 성을 사도록 강요하는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검토안 제5조 및 제6조의 강요와 혼동될 수도 있으므로 삭제함. 후단 “성매매행위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말한다.” 이 규정은 알선행위와 관련되어 발생한 범죄로 보아 처벌조항에서 규정함. 의뢰안6. 법률상 또는 사실상 지배하는 관계.... 규정은 처벌조항 안 제7조제1항3호에 규정 의뢰안8. 불법수익에 관한 정의 규정은 제의뢰안16조(몰수·추징)에서 한번 사용되고 있으므로 해당조항에서 불법수익에 대한 내용을 바로 규정

현행법	의의안	검토안	비고
제3조(적용상 유의사항)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제5조(국가등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윤락행위의 방지와 요보호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및 그 알선행위의 방지와 성매매된 자의 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1. 성매매행위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및 홍보 2. 성매매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 운영 및 기타 관련 서비스의 제공 3. 성매매된 자에 대한 인권침해 정지 실태조사 4. 성매매행위 및 알선 등 행위에 관한 정기실태조사 5. 성매매행위 방지 및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 시행 6. 성매매행위 예방을 위한 각급 학교기관, 군에서의 교육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관계법령과 법 집행에 대한 직무교육 7. 성매매된 자인 외국인 여성의 보호와 국제간 인신매매등 방지를 위한 형사제도의 강화 및 국제공조	제3조(국가 등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 및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매매행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2.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기타 원조의 제공 3. <u>성매매된 외국인 여성의 보호와 국제간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행위의 방지를 위한 국가기관 업무협조 및 외국과의 사법공조</u>	검토안3. 의의안 제5조(국가간 성적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관련기관의 협력)를 검토안 제3조제3호에 함께 규정함.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윤락행위 2.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는 행위 3.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 4.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5.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강요행위 2.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하는 행위 3. 성매매 행위의 장소나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성매매 행위를 한 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5. 성매매를 목적으로 타인을 공급 또는 소개하는 행위 6. 성매매알선등 행위에 대한 광고행위 7. 성매매행위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신매매, 감금, 강간, 폭행, 협박 등에 의하여 성매매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알선·권유·유인하는 행위 3. 성매매행위의 장소나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성매매행위 6. 성매매알선등행위에 대한 광고행위	

현행법	의뢰안	검토안	비고
<신설>	제5조(국가간 성적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관련기관의 협력) 법무부, 여성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관기관은 국제적 성매매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협력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거나 입국하려는 자중 타인의 여권을 소지한 자 기타 외국인여성의 여권을 소지한 자에 대한 “성적 인신매매 혐의자”인지 여부의 확인 및 범죄수사의 개시 2. 국가간 성적 인신매매의 경로와 범죄 조직, 범죄 수단 및 방법에 대한 조사 3. 고용 기타 관계에서 성매매된 자인 외국인의 여권을 소지하는 업주나 중개인 기타 알선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과 그 피해자인 외국인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절한 보호 및 지원		의뢰안1,2. 국가기관 상호간의 협력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는 검토안 제3조제3항(국가 등의 책임)에서 함께 규정. 의뢰안3. 처벌에 관한 규정이며 성매매행위를 하는 외국인을 고용 및 관리하는 자는 내국인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안 제7조제1항제3호(고용, 관리하는 자의 처벌)에 의하여 처벌하면 될 것임.
<신설>	제2장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6조(성매매된 자의 추정) ①이 장에서 정한 범죄의 수사 및 재판에 있어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로 조사받는 자가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성매매된 자’임을 주장할 경우 동인은 성매매된 자로 법률상 추정하며, 그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임은 수사기관이 입증하여야 한다. ②수사기관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라는 이유로 입건하고자 할 경우 동인이 제2조제3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2장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 <삭제>	제2장제목: 처벌의 특례라고 규정할 경우에는 전제되는 처벌규정이 있어야 하나 이 법에서는 성매매행위등에 대한 금지행위와 벌칙만을 두고 있으므로 처벌의 특례라는 표현은 삭제함. 의뢰안 제6조: 헌법 제27조4항, 형소법 제1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에서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매매행위자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당연히 무죄로 추정되며 유죄의 입증도 형소법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하여야 함은 당연하므로 삭제함.
<신설>	제6조의2조(신고의무 등) ①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의 종사자 또는 그 장은 시설이용자 등으로부터 알게 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에 대하여 이를 수사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기 신고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에 대하여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신고의무 등) ①누구든지 이 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원시설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여성복지상담소의 장 또는 종사자(이하 “시설종사원”이라 한다)는 지원시설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이용자(입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제5조 내지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의뢰안②. 시설이용자로부터 알게된 성매매알선등행위자만을 신고하게 할 경우 성매매를 강요한 자는 제외되게 되므로 최소한 검토안 제5조 내지 제7조의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토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 어차피 범죄행위가 있을 때 행정조치 및 처벌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사실의 입증을 위한 수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행정처분을 위한 위반사실을 검토안 제21조제3항에 의하여 즉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삭제함.

현행법	의뢰안	검토안	비고
제6조(비밀보장) 이 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처리중 알게 된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상대자에 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비밀업무 등의 의무) ①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수사, 재판 또는 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장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이 법에 의한 사건에 대하여는 성매매 행위자, 고소인·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제11조(비밀업무 등의 의무) ①제5조 내지 제9조의 범죄와 관련하여 수사, 재판 또는 보호사건의 조사·심리·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시설종사원은 그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성매매행위자 또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범죄를 고소·고발·신고한 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성매매행위자 또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범죄를 고소·고발·신고한 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인터넷 또는 신문 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제8조(재판심리 시 증인 등의 비공개) ①성매매된 자 및 성매매 행위자로서 자수한 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 중 자수한 자 또는 고발자를 심리할 경우에는 그 해당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증인으로 소환 받은 제1항 각 호의 해당자들과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여부 및 공개,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심리의 비공개) ①이 법에서 규정한 범죄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범죄를 고소·고발·신고한 자 및 성매매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사생활보호 또는 신변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이 법에서 규정한 범죄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 받은 신고자등과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또는 신변보호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여부 및 공개,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법원조직법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의뢰안①. 성매매행위자로서 자수자는 본인의 형벌만을 감면하면 될 것이므로 성매매된 자이거나, 알선등행위를 밝힐수 있도록 기여하는 신고자의 경우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자수자의 경우는 삭제함. 사생활보호뿐만 아니라 보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변보호를 추가함.

현행법	의뢰안	검토안	비고
<신설>	제9조(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자들이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수사기관이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자들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동인들이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이 법이 정한 시설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전문상담원들을 소개하여 동인들 중 1인을 동석시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③위 각항의 해당자가 장애인, 외국인, <u>아동인</u> 경우에는 동인들이 지정하는 자를 반드시 동석시켜야 한다.	제13조(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재판장은 신고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신고자등이 지정하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수사기관은 신고자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신고자등이 지정하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등은 시설종사원 중 1인을 수사기관으로부터 소개받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신뢰관계에 있는자가 출석하기 전에는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자등이 장애인, 외국인, <u>청소년인</u> 경우에는 당사자 및 보호자가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의뢰안③. 아동의 경우는 아동복지법에서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확대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신설>	제10조(사법경찰관의 의무사항) ①사법경찰관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조사시 '성매매된 자'의 개념과 '성매매된 자'는 형사처벌이 면제된다는 점,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킬 권리가 있다는 점, 동인이 출석하기 전에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 및 시설 무료 이용 및 여성복지상담소 이용 등 권한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성매매된 자에 대하여 명시적인 거부가 없는 한 이 법이 정한 여성복지상담소 또는 긴급보호시설로 인도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조사 전에 반드시 이 법 제22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위 행위자의 재산범죄에 관한 수사시에는 해당 행위와 관련한 재산권 피해 내역이 제22조에 관련한 것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제15조(사법경찰관리의 조치) ①사법경찰관리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제2조제3호, 제8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 제28조, 제32조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는 성매매된 자의 명시적인 거부가 없는 한 성매매된 자를 이 법이 정한 여성복지상담소 또는 일시지원시설로 인도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리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가 타인의 재산권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수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권의 내역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채권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사법경찰관리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의 현장방문상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여성복지상담소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의 규정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과 사법경찰리(경사, 순경)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인 사법경찰관리로 수정함. 검토안④. 의뢰안 제70조를 여기에 규정

현행법	의뢰안	검토안	비고
<신설>	제11조(외국인 여성에 대한 특례) ①외국인여성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피해사실을 고소하여 수사 및 형사 소송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해당 외국인여성이 수사절차의 참고인 또는 형사재판에서의 증인으로 소환된 경우 당해 심급절차에서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6장 제3절 소정의 보호명령, 같은 장 제5절 강제퇴거명령의 각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체류기간 중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른 복지시설의 이용 등 내국인 성매매된 자가 보장받는 수준의 보장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이 외국인여성에게 금전급부의 불이행 등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의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제3항(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은 제2항의 경우 이를 준용하고, 기타 배상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①외국인여성이 제5조 내지 제7조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 입은 사실을 고소·고발 또는 신고하여 수사 및 형사재판이 계속중이거나, 해당 외국인여성이 수사절차의 참고인 또는 형사재판에서의 증인으로 소환된 경우 당해 심급절차에서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명령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처분의 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있는 외국인여성에게는 이 법이 정한 지원시설의 이용 등 성매매된 자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재판이 계속중인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이 외국인여성에게 금전급부의 불이행,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제3항, 제31조, 제33조 내지 제36조를 준용한다	검토안①.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신고하거나 고소한 모든 경우에 특례를 적용 받도록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법체류자의 장기체류목적의 신고 및 고소의 남발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검토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범죄(피해자의 대부분이 성매매된 자임)로 인한 피해사실만을 고소·고발 또는 신고한 외국인 여성에게만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정함. 의뢰안② 형사법원이 형사상 배상에 해당하지 않은 사항까지 조사하여 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고 보아 조사규정은 삭제함. 검토안④. 명령의 선고등, 불복, 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소송비용, 위임규정을 준용토록 함.
제5장 벌칙	<신 설>	제5조(인신매매에 의한 성매매 강요행위) ①선불금, 계약금, 대여금, 금전, 기타 경제적 이익을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사람을 매매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나체공연 등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을 매매하여 국외에 이송하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자를 국내에 이송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검토안 제5조. 의뢰안 제2조제4호(성적 인신매매) 및 의뢰안 제12조제3항제1호(인신매매를 한 자)를 여기서 규정함.

현행법	의의안	검토안	비고
제5장 벌칙 제24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 2. 위계로써 또는 남을 곤경에 빠뜨려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 3.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20세미만의 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경우(제3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5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강요행위 등)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위계 또는 선불금 기타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2.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3. 장애인, 외국인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자 2. 타인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강간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3. 자신이 고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성을 파는 행위자로 하여금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 불임시술을 하게 한 자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인신매매를 한 자.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자신이 고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 성매매 행위를 하게 한 자. ④제1,2,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알선영업행위등)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단, 아래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성매매 행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제6조(성매매 강요행위 등) ①타인을 강간하여 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 또는 유도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를 고용 또는 관리하는 자로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마약 등을 제공하여 성매매행위를 하게 한 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특정한 장소에 감금 또는 감시하는 자 및 이를 목적으로 건축물 등에 쇠창살, 잠금장치, 감시 카메라 등 자유로운 출입을 어렵게 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매매행위를 하게 한 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를 고용 또는 관리하는 자로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로 하여금 낙태, 불임시술을 하게 한 자 3.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계로써 또는 선불금 등 채무를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2.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조(성매매 알선영업행위 등)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 성매매된 자와 관련 성매매행위를 강요한 경우의 처벌 의의안3. 장애인, 외국인을 성매매된 자의 정의에서 삭제하여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 받을 것을 전제로 삭제함. 의의안2. 강간의 경우는 검토안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의한 행위는 의의안에서 누락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보이므로 검토안 제3항1호에 포함됨. 의의안③1. 인신매매를 한 자는 형법제288조제2항(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는 1년이상 유기징역)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의의안과 같이 형량을 달리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검토안 제5조에서와 같이 인신매매 후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로 구성요건을 추가하여 형량을 높이고, 인신매매에 의하여 국내 및 국외로 이송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도 추가함. 의의안①단서. 성매매알선등행위는 성매매행위가 있도록 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실제로 성매매행위가 이루어 졌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으므로 단서규정은 중복되는 규정임.

현행법	의뢰안	검토안	비고
1. 영업으로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2.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유인 또는 권유하거나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윤락행위를 알선한 자 4. 영업으로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윤락행위를 알선하기로 약속한 자 ③ 윤락행위를 하도록 유인 또는 권유하거나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영업으로 성매매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자 2.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자 3. 성을 파는 행위에 종사하리라는 정을 알고서 영업으로 제12호의 업소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를 <u>공급 또는 소개하거나 제12호의 업주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를 대리하여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근로계약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성매매행위 및 알선 등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는 자</u> 4. 영업으로 제3호의 목적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를 일정한 장소에서 감시하는 등 관리하는 자 및 자신이 공급, 소개 또는 그와 유사한 목적의 계약 등을 대리한 자로서 제3호 소정의 성을 파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를 소개한 후 이를 사후에 관리하는 자 5. 제1,2,3,4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공한 자 ②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을 특정한 장소에서 구금 또는 감시하는 자 및 이를 목적으로 건축물 등에 쇠창살, 잠금장치, 감시 카메라 등 자유로운 출입을 어렵게 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자는 각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단, 고용인 및 성을 판 본인은 제외한다.) 2.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4.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기로 약속한 자 ④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한 자중 고용인 및 성을 판 본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기타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한다. ⑤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의 수입이나 성을 파는 행위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지불받는 선불금, 계약금, 대여금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가 받거나 받을 금품 또는 이를 원인으로 조성된 자산을 받아 생활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행위를 알선한 자 2. 영업으로 성매매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려는 자를 고용 또는 관리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공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행위를 알선하는 자 2. 성매매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영업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자 ④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안3. 공급 및 소개하는 것은 성매매알선행위와 같으며, 후단의 대리하여 계약하고 대가를 지급 받은 자는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처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의뢰안4. 검토안제①3과 동일한 내용으로 삭제. 의뢰안⑤.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의 수입이나 선불금 등을 받아서 생활하는 자라는 요건이 불명확하며 성을 파는 행위의 대가로 받은 금품을 불법수익으로 규정하지 않고서 그 금품 및 자산을 제 3자가 받아서 생활한 경우에도 처벌 할 수 있는지 의문임.

현행법	의의안	검토안	비고
제26조 (벌칙) ③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4조(성매매행위) ①성매매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성을 사는 자가 성매매행위와 관련하여 동화상 기타 영상의 제작을 강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성을 파는 자가 장애인인 정을 알고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성을 사는 자가 성을 파는 자로 하여금 위계, 위력으로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를 투입하게 하여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의 행위와 관련하여 검사는 수사 결과 동종전과가 1회 이하인 자로서 명백하게 성매매행위를 한 자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이하 '법원'이라고 한다.)에 '보호사건'으로 이를 송치하여야 한다. ⑥수사기관 및 법원은 '성매매행위'와 관련한 수사 및 재판 진행 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가 성매매 관련 사건의 피의자 등의 신분에 해당되는 것이 식별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성매매행위) ①성매매행위를 한 자(성매매된 자를 제외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성을 사는 자가 성매매행위와 관련하여 동화상 기타 영상의 제작을 강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성을 사는 자가 위계 또는 위력으로 마약 등을 성을 파는 자로 하여금 투입하게 하여 성매매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조: 단순 성매매행위 관련 처벌 검토안①. 성매매된 자가 성매매행위를 한 자의 범주에 속하여 처벌받는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매매된 자를 제외하도록 함. 이는 성매매된 자의 성매매행위가 강요된 경우이므로 형법에 의하여 당연히 면책이 된다고 할 수 있으나 제2조 성매매된 자의 정의 규정에서는 강요가 아닌 경우도 성매매된 자로 하고 있으므로 성매매된 자는 처벌에서 제외됨을 명시해야 할 것임. 의의안⑤. 제3장 보호조치 제22조에서 규정함 의의안⑥. 검토안 제12조(심리의 비공개)에서 성매매된 자와 신고한 자 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고, 검토안 제11조(비밀업수의 의무)에서 성매매행위자에 관한 사실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을 볼 때 그 이상 어떤 조치를 취하여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범죄행위자인 성매매행위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조치라고 보이며, 이 규정으로 인하여 원활한 수사와 재판이 가능할지 의문임.
<신설>	제15조(광고행위의 금지 등) ①성을 파는 행위, 제13조 제4항에 정한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서 정한 음란행위를 할 자를 소개 또는 공급할 목적으로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성매매알선 등 관련 업소의 종업원 모집공고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한 광고행위(각종 간행물 및 유인물, 인터넷, 기타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한 자 또는 직접 모집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을 알면서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 공급하거나 이를 게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제공되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유인하는 광고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제34항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을 알면서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 공급하거나 이를 게재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광고행위 등)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중사하게 할 목적으로 종업원 등을 모집하는 광고행위(간행물, 유인물, 인터넷, 기타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2. 나체공연 등 음란행위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유인하는 행위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행위를 권유, 유인하는 광고행위를 한 자 2.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행위를 위하여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 공급하거나 이를 게재 또는 배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 광고행위 관련 처벌 의의안①. 후단의 직접모집행위를 한 경우는 광고행위가 아니므로 삭제함. 의의안③. 단순히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영업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업소를 광고할 경우에는 검토안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광고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으로 처벌하면 될 것이므로 삭제함.

현행법	의뢰안	검토안	비고
<신설>	⑥제13항의 광고물 및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제16조(몰수·추징) ①제12조, 제13조,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얻은 “불법수익 등”은 이를 몰수한다. ②전항의 “불법수익 등”을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제1항의 몰수는 그 물건이 본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본인의 행위가 있을 후 그 점을 알고 취득한 자에 속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몰수·추징) 제5조 내지 제7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및 재산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의뢰안③.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에 의하여 당연 규정임.
	제17조(형사처벌에 대한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각 그 형을 면제한다. 1. 제13조 제4항을 위반한 자로서 자수자 또는 제12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에의 신고자(단, 이 법에서 정한 사건의 초범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4조를 위반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로서 자수자 및 제12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한 수사기관에의 신고자(단, 이 법에서 정한 사건의 초범의 경우에 한한다.) ②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각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 1. 제13조 제4항을 위반한 자로서 자수자 또는 제12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에의 신고자로서 초범이 아닌 자 2. 제14조를 위반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로서 자수자 및 제12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한 수사기관에의 신고자 ③수사기관은 성매매된 자 및 제1, 2항 규정에 의하여 면책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성매매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분이 된다는 점을 구두로 경고하고 문서상으로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성매매된 자에 대하여는 성매매행위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한 선불금 기타 일체의 금품 및 위약 약정에 따른 채무 기타 이와 유사한 일체의 채무와 관련하여는 이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타 법률의 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신고자에 대한 형의 감면) 제5조 내지 제7조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의뢰안①②. 다른 법률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자수자에 대해서는 필요적 형의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형법 제52조 자수 자복으로 인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을 적용 받도록 하고 신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임의적 형의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의뢰안③. 검토안 제15조(사법경찰관의조치)제1항에서 규정됨. 의뢰안④. 타 법률의 처벌규정의 적용여부에 관한 사항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할 내용으로 보이며, 다른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을 배제 할 수는 없어 삭제.

현행법	의의안	검토안	비고
	제18조(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의 준용) ①이 법 제12조·제13조에 관한 범죄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특정범죄로 본다. ②이 법 제12조, 제13조에 대한 신고자 및 그 친족 등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삭제>	신고자를 보복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이나 다른 법률의 개정효과가 발생하므로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을 개정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임.
	제19조(보상금) ①법 제12조, 제13조에 대한 범죄신고(자수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성매매알선 등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처분이 확정되고, 불법수익 등이 몰수, 추징되었을 경우에는 몰수, 추징된 금원 중 3%이상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자수자를 포함한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상금 지급 기준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보상금) ① 제5조 및 제7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형사처분이 확정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이 몰수·추징된 경우에는 몰수·추징된 금원 중 3/100 이상 15/1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상금 지급 기준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재정신청) ①이 법에서 정한 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서 정한 범죄에 대하여 고소, 고발 또는 신고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전항의 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④형사소송법 제261조 내지 제265조는 위 재정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제5조 내지 제7조의 범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의 재정신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① 재정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에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의 자의적인 공소권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임. 따라서 성매매범죄에 대한 정책적 취지를 감안 할 지라도 고소 또는 고발인이 아닌 신고자(범죄와는 직접관계가 없음)에게까지 재정신청권을 확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입법례도 찾아볼 수 없어 신고자의 재정신청권은 삭제함. ②행정소송법상 재정신청 기한 10일을 30일로 확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아 10일로 통일 함.
	제21조(행정처분) ①관할 시, 군, 구청장은 영업으로 성매매 행위의 장소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장소로 제공되는 장소에 관하여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제외한 기타 제12조, 13조, 제14조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그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 및 장소에 대하여 시설 등 폐쇄명령,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여성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수사기관은 수사 결과 제12항의 범죄행위의 장소로 제공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행정처분)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 한다. 이하 같다)은 영업자가 성매매행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장소로 영업소를 제공하는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신고에 의하여 영업하는 영업소를 대상으로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영업을 허가한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의뢰안①. 영업행위를 한 자에게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의 경우 위임의 범위를 6월 이내로 정하고 구체적인 기간은 검토안 제4항에서 여성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현행법	의의안	검토안	비고
	④폐쇄명령을 받은 자 및 그 소유자는 같은 장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유사 업소를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개설할 수 없다.	③수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영업소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이 있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다.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기간중이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에 제3자가 영업을 양수한 경우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간 그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 절차는 속행된다. 다만, 양수인이 양수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검토안⑦.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때에 영업을 양도할 경우에 그 효과가 중지된다면, 위법행위의 적발 시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영업소를 제3자 명의로 바꾸어 영업을 계속 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수인이 처분을 승계토록 함.
제20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영리를 목적으로 제4조제3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제22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①성매매 행위와 관련한 업소에 대한 소개를 하거나, 성매매행위를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가지는 선불금, 계약금, 대여금, 채무인수금, 대위변제금, 보증채무금, 신체에 관한 불법적인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약정,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한 위약금 약정 등 명목여하를 불문한 채권 기타 위와 관련된 일체의 채권은 그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②이 법에서 정한 성매매된 자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 기타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고용한 자가 성매매된 자 기타 그와 관련된 자에게 제1항에서 정한 각종 약정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 지급한 금전 기타 채권은 그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③이 법에서 정한 성매매된 자에 대하여 인신매매자 기타 알선 등 행위자가 성매매된 자 본인의 채무를 받기 위하여 제3자에게서 지급 받은 금원은 성매매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성매매행위 관련 채권의 효력) ①제5조 내지 제7조의 죄를 범한 자가 해당범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종류 및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채권에는 선불금, 계약금, 대여금, 채무인수금, 대위변제금, 보증채무금,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약정한 위약금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한 각종 채권을 포함한다.	의뢰안①. 죄를 범한자가 성을 파는 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무조건 무효로 한다면 정당한 채권까지도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채권의 범위를 해당범죄와 관련된 채권으로 한정하여 불법성을 명확히 함. 의뢰안③. 인신매매로 인하여 얻은 금품은 제19조(몰수, 추징)에서 몰수하고 있으므로 삭제함.

현행법	의의안	검토안	비고
제2장 선도보호 제8조(보호처분) ① 소년부판사는 소년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락행위를 한 20세미만의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기간은 6월로 하되, 소년부판사는 결정으로써 6월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판사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는 소년법중 보호사건에 관한 규정(제33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3장 보호처분 제1절 통칙 제23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제14조에 정한 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보호사건의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제24조(송치시의 신병처리) ① 제14조제5항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관할 법원이 있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기타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는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03조 또는 제205조의 구속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25조(송치서) ① 제14조 제5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를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송치서에는 행위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직업·피해자와의 관계 및 행위의 개요를 기재하고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보호처분 제22조(성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한 성매매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성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관할) ① 성보호사건의 관할은 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성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가 행한다. 제24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5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행위가 발생하는 장소에의 성매매행위자의 출입 및 연락금지 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에 의한 사회봉사(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한 한다)·수강명령 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 의한 보호관찰 4. 이 법이 정하는 지원시설에의 교육·상담위탁 5.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보호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 성매매행위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지원시설, 의료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의의안제3장. 보호처분에 관한 규정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제9조-제55조)과 조항 순서 및 내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특별히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사항을 준용토록 함.

현행법	의뢰안	검토안	비고
제9조(선도보호조치)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요보호자중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소 및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에 입소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에 따라 일시보호소 및 선도보호시설에 입소시켜 선도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요보호자가 20세미만의 자로서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등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서면으로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소 및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의 퇴소를 요청할 때까지 본인의 동의로써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갈음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에서의 선도보호기간은 1년의 범위내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조치를 받은 자는 이를 이유로 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의 입소 및 퇴소의 기준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선도보호의 내용)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담 및 치료 2. 개인의 정서안정과 인격향상을 위한 교육 3.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술교육 및 취업안내 4. 의료보호·건강관리 및 생활지도 5. 기타 선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6조(이송) ① 보호사건을 송치 받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한 조사·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즉시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이송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첨부하여 행위자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보호처분의 효력)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그 행위자에 대하여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에 송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이 법에 정한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당해 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로부터 시효진행이 정지되고 그 사건에 대한 제45조 제1항의 불처분의 결정(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의한 결정에 한한다)이 확정된 때 또는 제37조 제2항, 제45조 제2항,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의 1인에 대한 제1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	제25조(보호처분의 기간) 제24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기간은 3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보호처분의 변경) ①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24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기간은 6개월을, 동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다른법률의 준용) 성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내지 제17조, 제19조 내지 제28조, 제30조 내지 제32조제1항, 제34조 내지 제39조, 제43조 내지 제44조, 제46조 내지 55조 규정의 해당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폭력범죄”는 “성매매행위”로, “가정보호사건”은 “성보호사건”으로 본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1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에서는 보호처분 기간을 6월 이내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간의 균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현행법	의의안	검토안	비고
	제2절 조사·심리 제29조(조사·심리의 방향) 법원이 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함에 있어서는 의학·심리학·사회학·사회복지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성매매 행위자의 성행·경력·가정상황과 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보호사건 조사관) ①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하여 법원에 보호사건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조사관의 자격·임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조사명령) 판사는 조사관에게 행위자의 심문이나 성매매행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전문가의 의견조회) ①법원은 정신과 의사·심리학자·사회학자·사회복지학자 기타 관련 전문가에게 행위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성매매 행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법원은 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 결과에 참작하여야 한다. 제33조(진술거부권의 고지) 판사 또는 조사관은 보호사건을 조사할 때에 미리 성매매 행위자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34조(소환 및 동행영장) ①판사는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일을 지정하여 행위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②판사는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현행법	의의안	검토안	비고
	제35조(긴급동행영장) 판사는 성매매 행위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 없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36조(동행영장의 방식) 동행영장에는 성매매 행위자의 성명·생년월일·주거, 행위의 개요, 인치 또는 수용할 장소, 유효기간 및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발부연월일을 기재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7조(동행영장의 집행 등) ①동행영장은 조사관이나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법원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성매매행위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1년 이상 동행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③법원은 동행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성매매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보조인) ①성매매 행위자는 자신의 보호사건에 대하여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변호사, 성매매행위자의 법정대리인·상담소 등의 상담원과 그 장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자를 보조인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가 아닌 보조인은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법원은 성매매 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그 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법원은 성매매행위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서 정한 국선 변호인선임 청구권이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현행법	의의안	검토안	비고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39조(심리기일의 지정) ①판사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성매매행위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보호사건의 요지 및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리기일은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심리기일의 변경) 판사는 직권 또는 행위자나 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기일을 행위자 및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심리의 비공개) 판사는 보호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사생활보호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2조(증인신문·감정·통역·번역) ①법원은 증인을 신문하고 감정을 명하며 통역 또는 번역을 하게 할 수 있다. ②형사소송법중 법원의 증인신문과 감정·통역 및 번역에 관한 규정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숙박료 기타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비용에 관한 규정 및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43조(검증·압수·수색) ①법원은 검증·압수 및 수색을 할 수 있다. ②형사소송법중 법원의 검증·압수 및 수색에 관한 규정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현행법	의의안	검토안	비고
	제44조(협조·원조) ①법원은 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 상담소등 또는 의료기관 기타 단체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등 또는 의료기관 기타 단체가 그 요청을 거부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5조(불처분의 결정) ①판사는 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2.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습벽 등에 비추어 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②법원은 제1항제2호의 사유에 의하여 불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행위자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처분의 기간등) 보호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정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송치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송받은 경우에는 이송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7조(위임규정) 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현행법	의의안	검토안	비고
	제3절 보호처분 제48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 정한 행위가 발생하는 장소에의 성매매행위자의 출입 및 연락금지 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한한다)·수감명령 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4. 이 법이 정하는 시설에의 교육·상담위탁 5.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②제1항 각 호의 처분은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③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 성매매행위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상담소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 위반시의 제재사항과 재범시의 불이익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제49조(보호처분의 기간) 제48조제1항 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항제2호의 사회봉사·수감명령은 1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50조(보호처분결정의 집행) ①법원은 조사관, 법원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보호처분의 집행에 있어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사건의 성질에위반 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및 정신보건법을 준용한다.		

현행법	의의안	검토안	비고
	제51조(보고와 의견제출 등) 법원은 제48조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보호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 대하여 성매매행위자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52조(보호처분의 변경) ①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48조제1항 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의 보호처분기간은 6개월을, 동항 제2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기간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처분변경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성매매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보호처분의 취소)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자가 제48조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보호처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권,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54조(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직업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보호관찰관, 수탁기관의 장 및 보조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현행법	의의안	검토안	비고
	제55조(비용의 부담) ①제48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자의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성매매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판사는 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예납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매매행위자가 부담할 비용의 계산, 청구 및 지급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절 항고와 재항고 제56조(항고) ①제48조의 보호처분, 제52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53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성매매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②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제57조(항고장의 제출) ①항고를 함에 있어서는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항고장을 제출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8조(항고의 재판) ①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상당한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59조(재항고) ①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현행법	의의안	검토안	비고
	②제5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항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60조(집행의 부정지)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61조(종결된 사건 기록 등의 송부) 법원은 보호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2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 및 여성복지상담소 제12조(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수와 신고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복지시설 및 여성복지상담소 제63조(시설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된 자 및 제2장의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집행을 위한 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특별시, 직할시, 광역시 및 도별로 제64조에서 정한 각 시설을 1개 이상씩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하고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시설의 명칭, 설치기준, 신고절차, 운영기준,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지원시설 및 여성복지상담소 제29조(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각 시설을 지역별 균형과 시설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이를 신고하고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시설의 설치기준·신고절차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수 등에 관하여는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의뢰안①. 현재 시설의 설치현황(일시보호: 14개, 선도보호시설: 9개, 자립자활시설: 0개)과 시설의 지역별 편중(경기, 강원, 경북지역은 한곳도 없음)을 고려하여 각 지역에 종류별로 1개 이상씩 설치 의무를 두고 있으나 시설이용자 수 등을 파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의뢰안③. 시설의 명칭은 시설의 종류에서 규정한 명칭이 있고, 운영기준은 제30조(시설의운영)에서 중복규정하고 있으므로 생략함.
제11조(시설의 종류) ①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시보호소 : 요보호자에 대한 일시보호와 상담을 행하는 시설	제64조(시설의 종류)성매매된 자, 기타 성을 팔았거나 파는 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긴급보호시설 : 성매매된 자 기타 성을 팔았거나 파는 자의 선택에 따른 90일 미만의 무료 숙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소자의 특성을 조사하여 단기 또는 자립지원시설에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제28조(지원시설의 종류)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를 위한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시지원시설 :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중 이용희망자, 제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한 자 등을 대상으로 3월의 범위 내에서 숙식 및 상담 등을 제공하는 시설	

현행법	의뢰안	검토안	비고
2. 선도보호시설 :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에 의하여 위탁된 자를 대상으로 선도보호를 행하는 시설과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조치에 의하여 입소한 자를 대상으로 선도보호를 행하는 시설 3. 자립자활시설 : 요보호자 또는 선도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자중 사회적응이 곤란하거나 거주할 곳이 없는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숙식·직업알선 등을 제공하여 사회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자립지원시설 : 성매매된 자 기타 성을 팔았거나 파는 자중 자립자활이나 사회적응이 곤란하거나 거주할 곳이 없는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미만의 자립자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실시, 심신안정, 신변보호, 취업 등 정보 제공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급부 및 각종 기술교육, 취업교육, 의료지원 등 프로그램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청소년 시설 : 성매매된 자중 청소년으로서 친권자 기타 보호의무자로부터 사실상 양육받지 못하는 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교육법상 중등교육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동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자립자활 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의 실시, 취업 등 정보 제공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급부 및 각종 기술교육, 취업교육, 의료지원 등 프로그램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자립지원시설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시설 이용자로서 희망자, 제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한 자 등(청소년인 경우를 제외한다)에게 6월의 범위내에서 숙식,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설. 이 경우 이용기간은 6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청소년지원시설 : 제2호에서 규정한 자립지원시설 이용 해당자가 청소년인 경우 성년에 달할 때까지 숙식,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등교육 과정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하여 중등교육 과정의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시설의 업무) ①긴급보호시설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숙식의 제공 2. 개인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서비스 연계 4. 신변보호 5. 법률정보 제공 및 법률관련 지원 ②자립지원시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자립자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실시와 취업정보서비스 연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급부 및 각종 프로그램의 연계서비스 제공 3. 기술교육(위탁교육 및 연계교육 포함) 4. 자녀 동반시의 보육 지원 및 필요시 모자복지법상의 모자자립시설에의 연계 지원 5. 기타 여성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위 제1,2항의 시설은 법제48조 제1항 제4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상담업무를 병행 실시한다.	<삭 제>	의뢰안 제65조(시설의 업무)는 구체적으로 각 시설의 업무를 법에 규정하여 담당기능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시설의 종류에서 개괄적인 각 시설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함.

현행법	의의안	검토안	비고
	제66조(시설 사용 자격 등) ①성매매된 자 기타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하는 자는 제64조에서 정한 시설 입소에 관계없이 당해 시설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②제1항의 자중 시설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상담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시설이용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 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퇴소 및 이용 중단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시설의 장은 시설이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단체 생활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퇴소조치 또는 이용중단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에서 정한 자는 제64조 제2호에서 정한 시설을 1회에 한하여 같은 기간 동안 연장 사용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는 만20세에 달할 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삭 제>	의의안①②③. 제24조(시설의 종류)에서 시설 이용자격이 규정되어 있고, 의의안 제66조의 규정이 주로 시설 이용규정의 준수와 관련한 입·퇴소 조치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는 의의안 제65조(시설의 운영) 제4항에서 여성부령으로 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의의안④. 시설의 이용기간은 제28조(시설의 종류)에 포함됨.
제13조 (시설의 운영) ① 시설의 장은 요보호자의 건전한 가치관과 자립생활의 능력을 함양시키고, 사회적응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상담·훈련등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은 요보호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후 1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장은 시설 이용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이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 기타 시설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시설의 운영) ①시설의 장은 시설 이용자의 사회적응능력 등을 배양시킬 수 있는 상담, 정보제공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②시설의 장은 시설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입소 후 1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시설의 장은 시설 이용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이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기타 시설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시설의 운영) ①시설의 장은 시설 이용자의 사회적응능력 등을 배양시킬 수 있는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②시설의 장은 시설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입소 후 1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 의료기관에 질병 치료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시설의 장은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기타 시설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는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의의안②.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시설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로 규정되어있지 않으나, 의료급여법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의료급여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 이 법안에 의한 시설이용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수급자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보장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제13조의2 (시설에의 우선보호조치) 시설의 장은 경찰관서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설입소를 원하는 요보호자의 입소의뢰를 받은 때에는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입소대상자에 우선하여 보호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그 사유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현행법	의의안	검토안	비고
제14조(여성복지상담소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요보호자의 상담을 통한 선도를 하기 위하여 여성복지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모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자복지상담소는 상담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상담소의 업무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기준,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수와 신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여성복지상담소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된 자 기타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복지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소의 상담원은 상담 관련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여성복지상담소에는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과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이외에 상담소의 설치기준과 신고절차, 운영기준, 종사자(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및 인원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여성복지상담소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상담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복지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여성복지상담소에는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상담소의 설치기준·신고절차, 운영기준, 상담원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수 등에 관하여는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여성복지상담원) ① 시·도,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상담소에는 여성복지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상담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요보호자의 가정 및 신상에 대한 조사·상담 2. 요보호자의 직업알선 3. 요보호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선도 4. 요보호자의 실태파악 5. 요보호자를 위한 지역사회안 시설의 활용 알선 6. 가정문제상담 및 건전한 사회의 조성을 위한 지도·계몽	제69조(여성복지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장방문 상담서비스 2. 이용자에 대한 시설이용권 고지 및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시설 이용 연계 3. 이용자에 대한 위기 상담 4. 법률 정보 제공 및 법률 지원 5.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 시 동행 <삭 제>	제32조(여성복지상담소의 업무 등) ①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장방문 등 상담 2. 시설이용에 관한 고지 및 시설에의 연계 3. 법률정보 제공 4.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시 동행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상담소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② 상담소의 상담원은 상담관련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	검토안5.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에서 여성복지상담소 업무로 규정한 사항이 있음.

현행법	의의안	검토안	비고
7. 모자복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원의 업무 8. 기타 선도보호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상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상담원의 임용자격기준, 배치기준 및 교육훈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수탁의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보호자의 입소를 위탁 또는 의뢰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삭 제>		
<신설>	제70조 (사법경찰관리의 지원) 사법경찰관리는 여성복지상담소의 현장방문상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동행하여야 한다.		제70조. 사법경찰관리의 지원은 검토안 제15조(사법경찰관의 조치)제4항에 규정
	제71조(의료기관 지정) ①시, 군, 구청장은 제64조에서 정한 시설 이용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의료기관을 시설 이용자를 위한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및 상담소 이용자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3조(의료기관 지정 등) ①여성부장관은 제28조에서 규정한 시설의 이용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의료기관을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은 시설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설이용자에 대한 질병치료, 보건상담 및 지도 등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의뢰안②. 치료비용은 검토안 제34조(비용의 보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제72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의 특례) ①성매매된 자 중 수사기관에 의하여 형사처분이 면제된 자중 입소자를 포함한 일체의 시설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동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로 본다. ②위 항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 중 생계급여는 당해 시설에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급여는 시설을 경유하여본인에게지급한다. ③시설이용을 중단하거나 퇴소한 자에 대하여 시설의 장은 즉시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 시, 군,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중단한다. ④기타 위급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삭 제>	의뢰안제72조. 성매매된 자의 자활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과 시설의 이용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1. 시설의 이용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목적하고 있는 최저생활의 보호를 성매매된 자 모두가 필요로 하는지 여부 2. 타 법률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3.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효과를 방지하고 검토안 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한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도록 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행법	의의안	검토안	비고
제4장 보칙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여야 한다. 단, 제6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1,3,6호에 정한 사항에 대한 예산은 전액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지도·감독) ① 여성부장관은 시설 및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 및 상담소에 출입하여 시설·관계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2항의 시설 및 제14조제2항의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 및 상담소에 출입하여 시설·관계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4조(지도·감독) ① 여성부장관은 시설 및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상담소를 운영·관리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 및 상담소에 출입하여 시설·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64조의 시설 및 제68조의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을 출입하여 시설·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하기 전에 방문 및 검사 목적, 일시 등을 시설 및 상담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지도·감독) ①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설 및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상담소를 운영·관리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 및 상담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립한 시설 및 상담소에 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출입하기 전에 방문 및 검사 목적, 일시 등을 시설 및 상담소에 통보하여야 하며, 출입 시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폐지·휴지등의 신고) 제12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시설이나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5조(폐지·휴지 등의 신고) 제63조 또는 제68조에 의해 신고한 시설이나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폐지·휴지 등의 신고) 제29조제2항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시설이나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 하고자 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제7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시설이 아니면 여성복지상담소, <u>긴급보호시설</u> , <u>자립지원시설</u>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상담소가 아니면 여성복지상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가 시설의 권리와 신뢰를 보호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며, 명칭사칭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는데 있다고 본다. 다른 복지시설이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사회적 해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각 법률에 의한 복지시설의 명칭이 혼재되어 쓰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지원시설의 유사명칭까지 제한하는 것은 복지시설의 사회적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임.

현행법	의의안	검토안	비고
제18조(시설의 폐쇄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 또는 상담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1. 제12조제3항 또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상담소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을 거부한 때 3.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행정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등을 감안하여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시설의 폐쇄 등) ① 시·도지사는 시설 또는 상담소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1. 제63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나 상담소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을 침해하거나 이용권을 박탈, 제한하는 경우 및 부정 시설이용자로 하여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지급 받게 하거나 지급 받는 경우 3. 제7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76조를 위반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종류와 기준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시설 및 상담소의 폐쇄 등) ①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설 및 상담소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 및 상담소를 폐쇄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립한 시설 및 상담소에 한 한다. 1. 제29조제3항 또는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상담소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나 시설 및 상담소의 폐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상담소를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8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폐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검토안 제21조 및 제38조에서 직접규정함.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현행법	의의안	검토안	비고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시설 또는 상담소의 종사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운영한 자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3.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장 벌칙 제80조(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 법에서 정한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허위의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때에도 또한 같다. ②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제1항의 목적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치사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자기 또는 타인의 이 법에서 정한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보인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의의안제80조는 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를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이 법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맞지 않게 규정된 것으로 보이며, 만약 이 조항의 취지에 맞추어 "이 법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자가 보복의 목적인 때"로 수정할 경우라도 이는 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개정할 사항일 것임. ①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란 사람을 살해한 자로서 이 법이 정한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성매매행위 및 성매매알선행위등..)과 관련하여 관계가 없어 보임. ②형법 제257조제1항(신체를 상해한 자, 7년이하, 1천만원 이하) · 제260조제1항(폭행을 가한 자, 2년이하, 500만원 이하) · 제276조제1항(체포·감금한자, 5년이하, 700만원 이하) · 제283조제1항(협박한 자, 3년이하, 500만원 이하)
	제8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3.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한 시설 또는 상담소의 종사자 4. 제76조를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운영한 자 3.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4.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0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운영한 자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③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의안①3. 시설종사자의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나타내고 있으나 의무에 대한 벌칙을 두기 위해서는 의무위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는 바, 의의안 제67조(시설의 운영)를 모두 처벌하기에는 의무위반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삭제함.

현행법	의의안	검토안	비고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사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 내지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8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사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벌금형을 병과 한다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사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 내지 제9조 및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하고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의안 제81조 뿐만 아니라 의의안에서 주로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를 규정한 검토안 제5조 내지 제9조를 추가함.
제28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 또는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 제23항,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2. 제75조를 위반한 경우 3. 제77조 제1항 제23호를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2.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 또는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자 3.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의의안①1. 의의안 제9조제2·3(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의의안 제10조(사법경찰관의 의무사항)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판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관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나, 판사나 수사관에 게 과태료를 부과한 입법례는 찾을 수 없음. 의의안②. 과태료의 부과권자를 세분하고 있으나 시설의 설치, 지도·감독, 폐지 등에 관한 권한이 여성부장관, 시도지사에게 있음을 볼 때 여성부장관과 시도지사만을 부과권자로 하고 시도지사의 부과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던 될 것으로 보임. 검토안④⑤.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동법에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나 관할법원에의 통보자, 체납시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추가 규정함.

현행법	의뢰안	검토안	비고
	제6장 보칙 제84조(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등에관한 특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의 행위와 관련하여는 동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법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이 조항은 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는 타당하다.)	제4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형법 등 다른법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우선 적용 하도록 하고 기타의 법률과는 이 법이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제85조(기타 법률과의 관계)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에 대하여는 타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검토안 제43조에서 규정함.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다. 제4조(보호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보호처분 및 선도보호조치의 집행이 진행중인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시설·상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一時保護所”는 이 법에 의한 “일시지원시설”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善導保護施設” 및 “自立自活施設”은 이 법에 의한 “자립지원시설”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女性福祉相談所”는 이 법에 의한 “상담소”로 본다.	

현행법	의뢰안	검토안	비고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 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죄 ②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③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6호중 “淪落行爲등防止法 第11條 및 第14條의 규정에 의한 福祉施設”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28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로 한다. ④직업안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호중 “淪落行爲등防止法”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로 한다. ⑤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淪落行爲등防止法 第26條第3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淪落行爲등防止法 第11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善導保護施設”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로 한다. 제16조중 “淪落行爲등防止法 第11條第1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제1호·제3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淪落行爲등防止法 第14條”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31조”로 한다. ⑥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윤락행위등 방지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